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청계천 및 유지용수관리소에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3
- 설치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5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계천 : 45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상감시:15대(모전교,광고,삼일교,관수교,세운교,배오개교,마전교,나래교,오간수교,다산교,영도교,무학교,두물다리,고산자교,마장2교)</li><li>- 박스감시:9대(백운동천2,중학천2,삼각동천2,삼일교1,마전교1,배오개1)</li><li>- 광장감시:1대(효령빌딩)</li><li>- 하류감시:2대(본사)</li><li>- 지류감시:2대(정릉천1,성북천1)</li><li>- 디지털가든캠버스:1대(광고)</li><li>- 엘리베이터감시:5대(삼일교2,황학교3)</li><li>- 자전거대여소 감시:2대</li><li>- 자전거 안내소(실내) 감시:1대</li><li>- 판잣집 테마존 감시:3대</li><li>- 생태학습장 감시:4대</li></ul></li></ul>	반경 1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지용수관리소 : 7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뚝도정수장내:4대</li><li>- 자양취수장내:3대</li></ul></li></ul>	반경 100m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정	손병일	처 장	청계천관리처	02-2290-6810
	부	박태문	팀 장	청계천관리처	02-2290-6840
접근권한자		상기와 동일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9일 이내	청계천종합상황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29일) 만료시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삭제됨.(출력물은 파쇄)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청계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
- 확인 장소 : 청계천종합상황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됨.

청계천관리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2년 3월 28일)

별지 제 1. 2호 서식 1부. 끝.



